

분 할 개 시 결 정 공 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7. 1. 26 ~ 2017. 2. 17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구	동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서구	심곡동	285	대	25,405.9	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5, ***동 ****호(심곡동,대동아파트)	김** 외19인
		285-1	대	206.5				
		285-2	대	1,217.1				
		285-4	대	4323.9				

2017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

